

1 국가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1.1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요약/인용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률은 주로 연방 및 주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연방 법률, 규칙, 기준이 주 법률, 규칙, 기준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전자가 우선된다.) 이 자료는 연방 법령만 다룬다.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주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1970이다. 이 법은 상업용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른 연방 법령과 마찬가지로 주제 별로 정리되어 미국 연방 법전(U.S.C)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 규칙/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법률 조항의 세부 사항 또는 그 해석을 담고 있다. 이런 최종 규칙들은 연방규정집(CFR)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칙은 5권의 CFR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매년 7월 1일마다 개정된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장 보건 안전 일반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다른 연방 기관들도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연방규정집 29권(Title 29 CFR)

미국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규정/규칙 링크

미국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청

2.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예외

2.1 신체적, 정신적 보건의 포함되는 보건, 안전

2.2 근로자의 정의

요약/인용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의해 상업적 목적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2(6))

2.2.1 특수 근로자

2.2.1.1 이주 근로자

요약/인용

어떤 관련 법령에도 이주 근로자를 근로자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2(6))

2.2.1.2 가사 근로자

요약/인용

“가사 근로자는 “상업적 목적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고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2(6))

2.2.1.3 재택 근로자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법 및 관련 규칙에는 재택 근로자를 근로자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 특정 산업에서는 재택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 의복 직조 업종). 여성용 의복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 인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530)

2.2.1.4 자영업자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법 및 CFR에는 자영업자를 근로자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29 CFR 1977.5에는 “본 법률은 ”고용“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고/의견

관습법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실체를 근거로 고용 관계를 바라보는 본 법의 규정을 보면,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 취지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U.S. vs Silk, 331 U.S. 704(1947); Rutherford Food Corporation vs McComb, 331 U.S. 722(1947) 참고

참고

CFR 29권 (1977(5)(a))

2.3 사용자의 정의

요약/인용

“사용자”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 여기에는 미국 연방 정부, 주 정부, 주의 하위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단, 우체국은 사용자에 포함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252(5))

2.4 제외되는 산업 분야

2.4.1 농업

요약/인용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방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 1926)

2.4.2 건설

요약/인용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방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 1926)

2.4.3 서비스업

2.4.4 공공부문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9절은 연방 기관의 장에게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252(5))

2.4.5 기타

2.5 업무상 사고의 정의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2.6.1 업무상 질병 목록

요약/인용

집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목록은 있지만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록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부분에서 산업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6.2 업무상 질병이 아닌 기타 질병에 대한 보상 체계

3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집행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관할 정부 기관

요약/인용

노동부 장관 및 산업안전보건조사위원회(OSHRC)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5, 661)

3.1.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규칙 공포, 조사 및 수사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조사위원회는 노동부 조사관들의 결정을 재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5, 661)

3.1.2 책임자 및 조직 구성

요약/인용

노동부 장관은 정무직이다. 산업안전보건조사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교육, 경험을 갖춘 자 중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61(a))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및 기관

요약/인용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보건후생부 장관이 담당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71(a))

3.2.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보건후생부 장관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심리학적 요소, 혁신 기법, 기술,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69(a)(1))

3.2.2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책임자

요약/인용

보건후생부 장관은 정무직이다.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보건후생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보건후생부 장관이 해임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71(1))

3.2.3 예산

요약/인용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3.3.1 국가 산업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4 근로자 및 근로자 외의 사람을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4.1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

요약/인용

사용자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위험 요소가 없는 고용 형태 및 고용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본 법률에 따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4(a)(1)(2))

4.2 근로자 외의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4.3 사업장을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

4.4 근로자의 업무 관련 건강 검진

4.4.1 감시가 필요한 특정 위험 요소

요약/인용

29 CFR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CFR 29권(§§ 1910, 1926)

4.5 근로 환경 및 근로 방식에 대한 감시

요약/인용

사용자는 다양한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10, 1926)

4.6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의무

참고

CFR 29권(§ 1910(132))

4.7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보장할 의무

참고

CFR 29권(§ 1910(132)(a)(b))

4.8 응급 처치 및 복지 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 처치

요약/인용

건설 산업: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이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26(23))

4.8.2 위생 시설

요약/인용

건설 산업: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화장실, 세면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26(51)(c)(1)-(h))

4.8.3 음용수

요약/인용

건설 산업: 모든 사업장에 적절한 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26(51)(a)(1))

4.8.4 휴식 및 식사 공간

5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른 사용자의 예방 조치 수립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

5.1.1 보건 안전 관련 책임 및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책 또는 계획

5.1.2 안전 보건 담당자 임명

요약/인용

연방 기관에만 적용: 기관의 장은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산업안전보건 담당관은 차관보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지거나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며, 필요한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충분한 조직이 제공된다. 조직 직원은 본 절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60(6)(a))

5.1.3 서면 위험 평가

5.1.4 안전한 근로 체계 및 절차

요약/인용

건설 산업: 사용자가 지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 현장, 자재, 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26(21)(b)(2))

5.1.5 위험성에 대한 훈련 및 정보

요약/인용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제공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통지서를 사업장 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1903(2)(a)(1))

건설 산업: 사용자는 위험요소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관리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피하는 방법과 각각의 작업 환경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03(2)(a)(1)), 1926(21)(b)(2))

5.1.6 예방 조치 성과 검토 및 평가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연방 기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든 운영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공식 계획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연방 기관에만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26((6)(b)(5))

5.1.7 보건 안전 문제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

5.2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또는 기준을 시행할 의무

6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지원을 확보할 사용자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전문 기관

요약/인용

사용자는 노동부 장관이 제공하는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건설 산업에만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26(21)(b)(1))

6.1.1 보건 및 안전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 확보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 자격 요건

6.2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요약/인용

기관의 장은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연방 기관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60(6)(a))

6.2.1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7.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7.3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관리자의 의무

요약/인용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발생 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알려진 위험 요소가 없는 고용 형태 및 고용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모든 관련 규정, 규칙, 기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따른 기관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연방 기관에만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60(6)(9))

7.4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고위 간부의 의무

7.5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

인용/요약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 또는 행동에 적용되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규정, 규칙, 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4(b))

7.7 위험성 및 예방 조치에 대해 문의할 권리

인용/요약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6절에 감시 또는 측정 대상으로 규정된 잠재적인 독성 물질 또는 유해한 물리적 성분에 근로자가 노출된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그런 모니터링 및 측정에 입회하고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가 해당 기록 중 자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7(c)(3))

7.8 위험한 상황을 피할 권리

7.9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

인용/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본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기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방 법원이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60)

7.9.1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되지 않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 사직할 권리

인용/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본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

며, 기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방 법원이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60)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조, 협력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

요약/인용

국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6(a)(1))

8.1.1 목적, 역할, 기능

요약/인용

국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행정 문제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 및 보건후생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권고를 제시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56(a)(2))

8.1.2 구성 및 의장

요약/인용

국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12인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2인은 사용자, 2인은 근로자, 2인은 산업보건 전문가, 2인은 산업안전 전문가, 4인은 공공 부문을 대표한다. 산업보건 전문가를 대표하는 2인과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2인은 보건후생부 장관이 지명한다. 모든 위원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지명된다. 모든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며,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참고

CFR 29권(§ 1912(a)(2))

8.2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할 사용자의 의무

8.3 보건 안전 담당 근로자 대표자를 선정할 근로자의 권리

8.3.1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 인력 규모 기준

8.3.2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의 자격 조건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역할, 권리, 권한

8.4.1 사업장 조사권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8.4.3 인터뷰 참관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8.4.5 조사관과 동행할 권리

8.4.6 시설물 사용권

8.4.7 안전보건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급 근무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8.4.8 시정 통지권

8.4.9 사용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8.4.10 위험한 업무의 중단을 지시할 권리

8.5 사외 근로자 대표의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입권

8.5.1 사업장 출입권

8.5.2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조사권

8.5.3 근로자와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 조치 개시권

8.6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8.6.1 근로자 대표의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

8.6.2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립 조건

8.6.3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목적, 역할, 기능

8.6.4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업무의 기록

8.6.5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공유

8.7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무적 훈련

8.8 보복으로부터 보호

요약/인용

누구도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또는 그와 관련된 불만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절차를 개시했거나, 해당 절차에서 증언을 했거나, 증언을 하려고 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 660(c)(1))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의무 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구체적인 위험 요소 또는 위험

9.1 생물학적 위험 요소

요약/인용

사업장내 생물학적 위험 요소 표시 규정 참고

참고

CFR 29권(§ 1910(145)(e)(4))

9.2 화학적 위험 요소

9.2.1 취급, 보관, 라벨링, 사용

요약/인용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포함한 독성 물질 관련 조항 참고

참고

CFR 29권(§ 1910 Subpart Z)

9.2.2 화학물질 제조, 공급, 수입자의 사용자 안전, 보건 보호 의무

참고

CFR 29권(§ 1910(1200))

9.2.3 살충제

인용/요약

살충제 라벨링 규정 참고

참고

CFR 29권(§ 1910(1450))

9.3 인간공학 관련 위험 요소

9.4 물리적 위험 요소

9.4.1 이온화 방사선

참고

CFR 29권(§ 1910(1096))

9.4.2 진동 및 소음

요약/인용

소음 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 노출의 효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1910(95))

9.4.3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CFR에는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9.4.4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

참고

CFR 29권(§ 1910(146))

9.4.5 사업장 시설물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위험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없다. 건설 산업의 경우 작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건설 산업에만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10(502))

9.4.6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9.4.7 화재 위험

참고

CFR 29권(§ 1910(160))

9.4.8 흡연

9.4.9 석면

참고

CFR 29권(§ 1910(1001))

9.4.10 나노 기술 관련 위험

9.4.11 사업장 내 HIV 감염

9.5 심리사회학적 위험 요소

9.5.1 심리사회학적 위험

9.5.2 직장 내 폭력

9.6 기타 위험 물질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CFR에는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경우 면진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10(1043))

9.7 기계

9.7.1 기계 및 도구 관련 위험

참고

CFR 29권(§ 1910(212))

9.7.2 기계 설계 및 제조업체의 기계 운용자 안전 및 보건 보호 의무

참고

CFR 29권(§ 1910(1910))

9.7.3 기계 설계, 제조, 수입, 공급자의 기계 정보 제공 의무

9.7.4 승인/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할 의무

9.7.5 기계 및 장비 유지 관리

요약/인용

농업에는 농기계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건설업에는 기계류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26, 1928)

9.7.5.1 적용 대상 장비 목록

요약/인용

농업에는 농기계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건설업에는 기계류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CFR 29권(§ 1926, 1928)

9.8 취약한 근로자 보호 규정

9.8.1 임산부 보호

9.8.2 수유 중인 여성 보호

9.8.3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여성 근로자 배정 제한

9.8.4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특정 연령 근로자 배정 제한

10 사고/질병에 대한 기록, 통지,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준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록 및/또는 원인 조사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요약/인용

모든 사용자는, 본 파트의 규정에 따라, 사망, 휴직, 업무 투입 또는 이직 제한, 응급 처치 수준을 넘는 의료적 처치, 의식 불명을 초래한 사망 부상, 질병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휴직, 업무 투입 또는 이직 제한, 응급 처치 수준을 넘는 의료적 처치, 의식 불명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10 미만 사업장 또는 저위험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CFR 29권(§§ 1904(1)(a)(1), 1904(4)(a), 1904(4)(a)(1), 1904(2)(a)(1))

10.1.2 준사고

10.1.3 업무상 질병

요약/인용

모든 사용자는, 본 파트의 규정에 따라, 사망, 휴직, 업무 투입 또는 이직 제한, 응급 처치 수준을 넘는 의료적 처치, 의식 불명을 초래한 사망 부상, 질병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휴직, 업무 투입 또는 이직 제한, 응급 처치 수준을 넘는 의료적 처치, 의식 불명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한/의무

이 규정은 10 미만 사업장 또는 저위험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CFR 29권 (§§ 1904(1)(a)(1), 1904(4)(a), 1904(4)(a)(1), 1904(2)(a)(1))

10.2 사용자의 업무 상 사망, 부상, 질병을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보고할 의무

요약/인용

업무 관련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3인 이상이 입원한 경우, 사용자는 사망자 또는 입원자에 대해 전화 또는 인편으로 산업안전보건청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참고

CFR 29권 (§§ 1904(39)(a))

11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집행

11.1 산업안전보건 조사관 임명

요약/인용

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조항에 걸쳐 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조사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11.2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권한

11.2.1 사업장 출입권

요약/인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대에 지체 없이, 사용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공장, 시설, 건설 현장, 그 밖의 구역, 사업장, 지역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근무 시간 중, 또는 그 외에도 합리적인 시간대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당 작업 장소 및 모든 관련 환경, 구조물, 기계, 기구, 장치, 장비, 자재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970, §§657(a)(1), 657(a)(2))

(CFR 29권, §§ 1903(3)(a))

연방 기관: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운영 구역에 대해 적어도 연 1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업무 성격 상 사고, 부상, 질병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에 대해 더 자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충분한 횟수의 불시 조사 및 불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CFR 29권, 1960(25)(c))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57(a)(1), 657(a)(2))

11.2.2 조사, 시험, 질의권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조사 목적과 관련하여 환경 샘플을 채취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합리적인 조사 기법을 사용하고, 시설물의 사용자,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참고

CFR 29권(§§ 1903(3)(7)(b))

11.2.3 조사권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할 의무

11.3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강제 집행 권한

11.3.1 명령권 또는 통지권

요약/인용

장관 또는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합리적인 시정 기한을 적시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58(a))

11.3.2 과태료 부과권

요약/인용

감독관은 위반 통지서 및 시정 명령 외에도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59(a))

11.3.3 인허가 취소 또는 중지 권한

11.3.4 위험한 업무를 중지시킬 권한

요약/인용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른 절차를 통해 해당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제거될 수 없는 경우, 노동부 장관은 지방 법원에 해당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업무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62(a))

11.3.5 기소 개시 권한

11.3.6 기소 시행 권한

11.3.7 그 밖의 강제 권한

11.4 법원의 제재

11.4.1 법인에 대한 벌금

요약/인용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는 위반 행위 별로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규정되어 있다.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최소 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66)

11.4.2 자연인에 대한 벌금

요약/인용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는 위반 행위 별로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규정되어 있다.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최소 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66)

11.4.3 벌금 외의 제재

11.4.4 형사적 책임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타인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66)

11.4.5 징역 기간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최소 형량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위반 행위의 경우 최대 형량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1970, 공법 91-659[S 2193] (29 USC, 15장) (§§666)